



#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4다321232, 2024다321249 판결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해지 후 잔여수수료의 성격에 관하여, 수수료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 대가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성격을 명확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1. 사안

보험대리점(피고)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보험설계사들(원고)이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잔여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피고의 수수료 지급 구조: 피고의 내부 규정은 총 수수료 중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익월에 선지급하고, 나머지 잔여분은 보험계약 유지 여부를 전제로 7차월부터 19차월까지 불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원고들은 해촉 후 미지급 잔여수수료 지급을 청구(본소)했고, 피고는 기지급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반소)함.

##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전부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이고, 다만 계약 유지(분납의 전제)를 전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일 뿐이라고 판단함. 따라서 원고들이 해촉된 이후에도 원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잔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고, 수수료의 성격 및 지급 의무의 존부가 쟁점이 됨.

## 3. 대법원의 판단 : 원심판결 파기환송

##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계약서, 규정 등) 해석 시, 법원은 문언의 내용 외에도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종합 고찰하여야 함.

##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위촉계약상 보험설계사의 업무에는 신규 보험계약의 판매중개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도 포함될 수 있음. 또한, 수수료가 장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되는 방식은 수수료에 계약 유지·관리의 대가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그럼에도 원심은 잔여수수료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인지, 아니면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 대가인지, 만약 후자라면 계약이 해지된 원고들에게 지급될 성질의 것인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수수료 전부를 모집의 대가로 단정하였음. 이는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보험설계사의 위촉계약 해지 시 문제되는 잔여수수료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대법원은 수수료가 위촉계약의 내용에 따라 단순히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대가에 그치지 않고, 계약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이에 따라 향후 유사 분쟁에서 법원은 위촉계약서의 문언, 수수료 지급 규정 및 방식 등을 면밀히 살펴 수수료의 구체적인 성격을 확정 후 지급 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는 위촉계약 해지 후의 잔여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계약 내용의 해석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는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보험업계의 수수료 관련 분쟁 실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관련구성원

### 이원

변호사

02-316-4406

wlee@shinkim.com

### 문희춘

변호사

02-316-4051

hcmoon@shinkim.com